

의안
번호

128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6. 07.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128호

다. 제출일자 : 2023. 05. 23.

라. 회부일자 : 2023. 05. 25.

2.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 교육의 권리보장을 위한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위 치 : 성북구 종암로 18 거산프라자 (3,4층)
- 규 모 : 596.18m² (약 180평)
- 인 력 : 13인 (센터장 1, 직원 12)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

다. 위탁방법 : 재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 전반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중증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전문치료 및 문화여가수업을 통한 개별적 기능향상 지원
-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 시설관리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 함)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1)에 따라 성북구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2023.12.31.자로 “교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5년간(2024. 1. 1. ~ 2028. 12. 31.)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임. 위탁대상 운영현황 다음과 같음.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현황>

소재지	면적(㎡)	연간사업비	위탁기간	운영주체	교육인원	운영조직
성북구 종암로 18 거산프라자(3.4층)	596.18㎡	· 합계 7억 5,744만원 · 운영비 - 6억 384만원 - 시비 5억 300만원 - 구비 1억 84만원 · 임대료 - 1억 5,360만원	2021.1~ 2023.12.31. (3년)	(사)서울장애인 부모연대	30명	12명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는 점에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으로의 위탁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위탁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2022년도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 지침²⁾이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된 사항을 따른 것이며,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도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한 바,³⁾있음.

2) 2022년도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 지침 위탁기간 변경

구분	2021	2022
센터운영 위탁	2) 위탁계약의 체결 ○위탁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관의 장이(생략)	2) 위탁계약의 체결 ○위탁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관의 장이(생략)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재계약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23.5.11.]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규정에 의거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본 사무의 재위탁 추진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